

문서번호	기획조정실-6052
보존기간	영구
결재일자	2020.09.15.
공개여부	공개
방침번호	이사장 방침 제 92호

★차장	팀장	기획조정실장	경영전략본부장	이사장
윤장미	유홍선	최재연	전기성	09/15 조성일
협 조	상임감사	이성일		

직제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안

2020.

직제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안

(제 안 요 지)

1. 개정사유

가. 「상가운영처」의 지하도상가 전대단속 업무 수행 ‘팀단위’ 기구 조정

- 지하도상가 내 전대행위 음성화, 전차인 제보를 통한 전대 단속활동의 한계 등에 따른 ‘11기동대’ 팀기능 축소로 해당 전대업무 ‘운영팀’ 으로 편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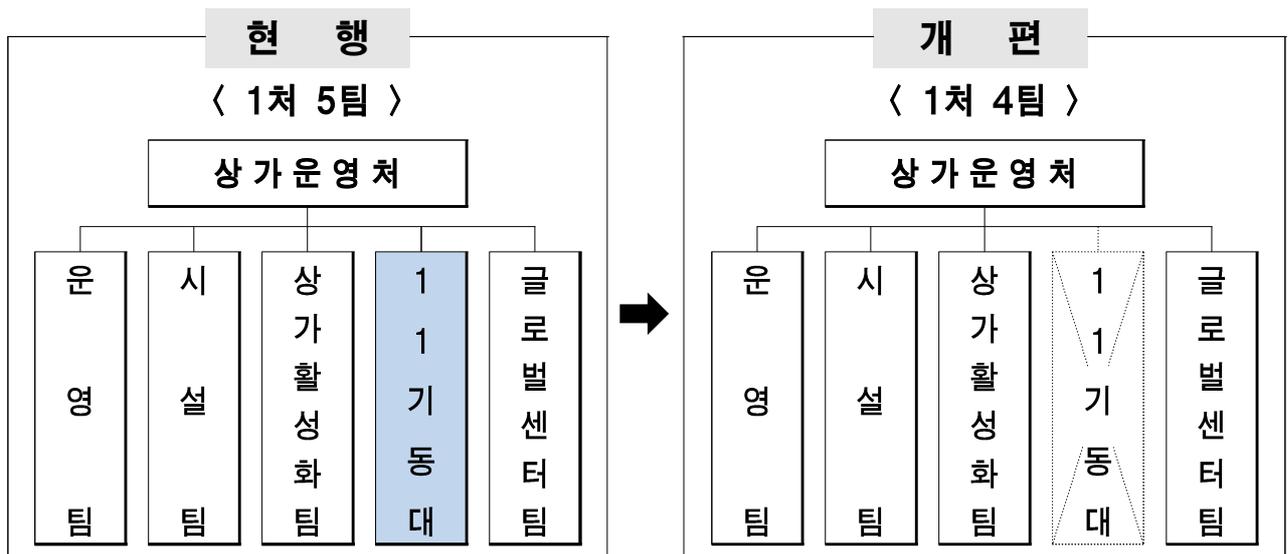
나. 「장애인콜택시운영처」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고려한 부서내 정원 조정

- ‘관리팀’과 ‘현장관리소(동부·서부)’ 간 차량관리 업무 중복 개선을 위해 ‘관리팀’으로 장애인콜택시 차량관리 업무 및 기술인력 통합 운영
- ‘현장관리소’의 운전원 복무관리, 모니터링 업무 강화를 위해 사무인력 보강

2. 주요내용

가. 기구 조정 (안 제3조제1항의 ‘별표1’)

- 「상가운영처」 산하 ‘11기동대’ 폐지 : △1팀



나. 정원 조정 (안 제3조제1항의 ‘별표2’)

- 「장애인콜택시운영처」 직렬간 정원 조정 (부서 정원 내)
 - 설비 5급 △2명 ⇒ 사무 5급 +2명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

- 장애인콜택시 관리소 인력 운영개선(안) (장애인콜택시운영처-5409, '20.7.23.)
- 장애인콜택시 정원 조정 및 인력 충원(요청) (장애인콜택시운영처-5432, '20.7.23.)
- 규정관리규정 제7조(입안) 및 제10조(절차)

나. 절 차 : 이사장 결재 후 공포·시행

다. 기 타 : 신·구정원 대비표 등, 별첨

직제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안

직제규정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“별표1” 및 “별표2”를 각각 별지의 “별표1” 및 “별표2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